

제41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13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
-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 | 1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
| 2.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3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0 |
|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0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2 |
| 4.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22 |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 | 23 |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최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간사님 기다리세요.

지금 몇 명이 필요하지요?

○행정실장 이동엽 11명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몇 명이지요?

○행정실장 이동엽 10명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10명이네. 한 분만 빨리 오시라고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야 나갈 거예요, 최형두 간사님이. 그러니까 빨리 정동영 의장님 오시라고 해서……

○최형두 위원 그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안 드립니다. 간사님, 우리가 최소한 회의는 하게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형두 위원 회의를 스스로 개최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흥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최민희 잠시만 기다리시면 그 흥결이 곧 시정됩니다.

연락해 보시지요. 지금이 10시 5분이지요? 황정아 위원님이나 정동영 위원님 빨리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가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조치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행정실에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황정아 위원도 연락하면 될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빨리 올라오시라고……

○한민수 위원 잠시 왔다가……

○위원장 최민희 왔다 가시면 됩니다.

○김현 위원 지금 최고위원회의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최민희 최고위원회의 안 하셔도 됩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회의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형두 위원 이렇게 무리하게 회의를 하니까 회의 자체가 지금 성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한민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오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최형두 위원 우리야 이 회의는 부당하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민수 위원 그렇지 않고요. 국회 상임위 회의 여는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방송장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방통위 직원을 구속시키더니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독립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애쓰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 사실 MZ 세대 중심이라 정파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방심위 직원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한 이 사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경경, 사법적 탄압이 가해짐으로써……

○최형두 위원 저도 마이크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일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류희림 위원장의 고발로 시작된 거지요? 이게 매우 심각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께는 황정아 위원님 올라오시고 나면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하신 발언은, 위원장님 하신 발언은?

○위원장 최민희 이거는 위원장의 진행, 위원장에게는 의사진행발언이 없습니다. 저는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오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중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2024년 9월 13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열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열 분,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간사님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고,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할 것 있으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2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도대체 오늘 이 회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밝혔듯이 법원이 암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서 사법 절차로 진행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영장 발부를 통해서 뭔가 밝혀야 될 사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 자체를 국회 상임위에서 현안질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국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22대를 시작한 지 이제 100일째 됩니다. 그 10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 과방위가? 임기 끝나 가는 MBC 방문진 이사 임기 지켜 주려고 100일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같은,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중요한 문제가 우리 과방위에도 닥쳐 있습니다. 바로 방심위는 그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사법 절차로 진행된 방심위의 암수수색을 문제를 삼아서 방심위가 진행하는 방송심의, 지금 여기서는 방심위의 방송심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따진 것도 아니고 방송심의를 위해서, 방송심의는 뭡니까? 공정하지 않고 왜곡

되고 편파적이고 또는 허위 조작 뉴스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정방송과 또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한 방심위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모든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김현 간사께서 협의를 하셨을 때 이 회의는 부당하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의를 강행한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진행한 사법 절차를 간섭하겠다는 것은 무슨 저의인지 국민들과 함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님.

2분 드리십시오.

○김현 위원 류희림 방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민원사주를 했고 그것이 방심위 공익제보를 통해서 권익위에 신고가 됐습니다. 보통 도둑을 신고를 하면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게 맞는데 신고자가 누군지를 색출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의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방심위는 독립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KBS, YTN, JTBC, MBC 등 방송사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원에서 다 정지당했습니다. 일체의 집행이 정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결산에서도 390만 원을 보상하라라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원회는 자체 셀프 인상으로 1억 9000여만 원의 국무총리급의 연봉을 받는 등 국민들의 질타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방심위를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관리 감독을 행사해야 되는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세금이 있는 곳에 국민들의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은 방통위를 대신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출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방통위·방심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후에 진행되겠지만 9월 30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진실을 밝혀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저지하고 방송장악을 저지하는 것이 저희 과방위의 역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김현 간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형두 간사께서는 오늘 현안질의 개최를 반대하신다는 걸.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오늘 현안질의는 시의적절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상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휴가가 시작됩니다, 오후부터. 그런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 분과 그리고 위원장을 대신해서 오기 싫었는데 오셨을 관계자 여러분, 방심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얼마나 바쁜지 저도 지역구 해 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라는 사상 초유의 악질 범죄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공익자 색출 소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앞뒤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상당한 문제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원래 독립적인 기관으로 출범한 이유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어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는데 류희림 위원장은 이러한 독립기관을 악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 검열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정수 위원, 강경필 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국정감사 때 방심위는 항상 국감을 할 때 방통위하고 같이 국감을 하는데 저는 국정감사를 방심위 독자적으로 하루를 잡아서 독립적인 방심위 국감을 따로 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출석들을 안 해 갖고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청문회 개최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문회 개최와 더불어 10월 국정감사 때 독립적인 방심위의 국정감사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잘 들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저 의견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혼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셔야지요.

○**최형두 위원**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도저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아니, 도대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을,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법원이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까? 법원이 공공…… 이것 보십시오. 공공기관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의 신원을 누군가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원은 그 압수수색 영장이 정당하다고 발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아무런 법치국가도 아니고 아무 무엇도 없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종면 위원** 그냥 막 발언해도 되면 저도 하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지금 시간을 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숫자를, 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원의 결정, 법원의 저기를 무시하는……

○**노종면 위원** 권력이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민원사주, 청부민원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희대의 언론 침해 사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형두 위원** 법원의 판결을 통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한 것입니다. 지금 법원 판결을 통해서 방문진 이사까지도 돼 있고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언론인 여러분, 빨리 사진 찍어 주세요. 그래야 이 상황이 끝납니다.

○**최형두 위원**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장 최민희** 앉으시든지……

○**노종면 위원** 그러면 법원이 둘 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십시오. 국회가 그 정도…… 여당이 그런 걸 중심을 잡아 주셔야지요, 여당이.

○**최형두 위원** 솟자로 여기서 이렇게 큰소리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영장을 발부합니까?

○**노종면 위원** 여당이 류희림의 민원사주를 두둔하니까 경찰도 이러는 것 아닙니까?

○**최형두 위원** 무슨 민원사주입니까?

○**노종면 위원** 그러면 민원사주가 아닙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방송이 잘못되어서 그 방송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노종면 위원** 처제가, 조카가, 친동생이, 그 수십 명이 전부 류희림하고 관련자인데……

○**최형두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이,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앉으실 거예요? 최형두……

○**노종면 위원** 그게 공익입니까?

○**최형두 위원** 노종면 위원님, 법원의 판단을 믿으신다면……

○**노종면 위원** 자기 친인척들, 자기 지인들을 동원해 갖고 그렇게 해서 나온 방심위 결정 전부 다 소송 걸려 가지고 전부 다 법원에서 졌어요.

○**최형두 위원**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국회가 왜 있어요?

○**최형두 위원** 아니, MBC가 허위 조작 뉴스를 방송해서 그걸 심의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지금?

○**노종면 위원** 그걸 방조하는 거지요, 그것은. 방임하고 잘한다고 추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저러는 것 아닙니까?

○**최형두 위원** 뭘 추켜세웁니까, 이렇게 다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노종면 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최형두 위원** 저희가 이건 맞지 않다, 더구나 국정감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정치는 타이밍이에요.

○**최형두 위원** 참,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김현 간사님, 김우영 위원님이 지금……

○**최형두 위원** 저는 더 이상, 제가 웬만하면 여기서 좀 간곡하게 호소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방적 진행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이제 앉으시든지, 나가실 겁니까?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 청문 의결 절차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로.

○**위원장 최민희**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최형두 위원** 저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

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된 사법 절차를 공권력의 탄압이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위원장 최민희 아니, 최형두 간사님, 지난번 MBC 가처분 인용됐더니 법원 앞에서 시위하셨잖아요. 그게 법원 결정에……

○최형두 위원 법원에 대한, 그러면 법원 앞에 가서 의사를 표시하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자, 그만하시고요.

○노종면 위원 저희들 나름대로 의사표현하는 겁니다.

○김우영 위원 우리는 국회가 갖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으로서 하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 저는 다수결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한민수 위원 그만하시고 회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최민희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최형두 위원 제발 우리 야당 위원님들 진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이제 사진 다 찍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진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좀 냉정을 찾으십시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최형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방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래요.

○위원장 최민희 어저께 너무 바빴습니다.

○김현 위원 어제도 많이 했어요.

○최형두 위원 냉정을 찾아 주시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최민희 AI 관련한 법안은 양당 간사님께서 잘 의논하셔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이미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민수 위원님께 드리고요.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준석 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위원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런 모습과 언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번에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이 없어요. 오로지 용산에 있는 두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부러워했던, 전 세계가 칭찬했던 우리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붕괴되고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검찰은 2년 반 동안 야당 대표와 야당을 죽이기 위한 수사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치 검찰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누가 검찰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믿겠습니까? 무너졌지요.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심의 행태를 보십시오. 일방적인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제도가 좋으면 뭐 합니까? 기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희권익위원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미. 방통위,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지요. 방심위, 사상 초유의 민원사주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드실 겁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경찰, 이제는 경쟁합니까? 세상에 저런 경찰 수사 본 적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따로 있고 주객전도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습니까, 신고하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데.

이게 야당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 모든 중심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습니다. 권력 3년 안 남았습니다. 저는 다음 정권이 걱정됩니다. 이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힘은 기대할 곳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모든 정파들이 모여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이제는 그만 놔두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난 9월 10일 날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공익신고자를 색출한다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있었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압수수색, 보복 아닙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정말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안간힘을 쓰셨습니다마는 밀실 회의해서 꼼수로 위원장 연임할 때부터 우려됐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두 번 이뤄지는 동안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아마 여기 안 나오신 국민의 힘 위원들, 속으로는 동조할 겁니다—현안질의를 열었는데 류희림 위원장도 오지 않고 여당 위원들도 불참했습니다. 국회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도대체 류희림 위원장은 왜 오지 않은 겁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립니까? 이제는 민원사주도 모자라서 압수수색까지 사주한 겁니까?

김준희 지부장님,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 만행에 가까운 일을 지켜보셨어요.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날 퇴임한다고 할 때 저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커피차까지 부르면서 기뻐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소회와 지금의 소회가

어떻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류희림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에 방심위 별명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청부심의……

○**한민수 위원** 앞에 대고 좀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준희** 방심위 별명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청부심의, 입틀막 심의 그런 수많은 별명들이 부끄러웠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모든 직원들이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축하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제가 또 지난번에 준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한테 질의까지 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더군요. 우리 방심위 지부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평가 조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한민수 위원** 결과를 다 아시겠습니까는 능력이 부족하다, 96.8%입니다, 매우 미흡. 저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도 오래했고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전원이 부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 중요한 방심위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임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다면 류희림 위원장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다시 연임을 시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참고인 김준희**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민원사주 의혹이 터졌으면 사실은 본인이 알아서 먼저 사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해졌던 잔여 임기를 다 마쳤고 그 이후에, 기존에는 국회에서 위원들을 다 추천해 줄 때까지 대통령이 기다려 줘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재위촉이 됐거든요. 저는 그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날 저렇게 기쁘게 행사를 하고 연임이 되더라도 몇 달은 뒤에 연임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민수 위원** 김준희 위원장께서도 다 생각을 하시면서도 아무래도 제한이 있으니…… 윤창현 위원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다시 또 연임을 시키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고인 윤창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여전히 방송장악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해서 어제인가요, 최철호 씨에 대해서, 선방심위 위원을 역임했던 최철호 씨에 대해서 권익위가 이해충돌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법적 요소들을 마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지지율 폭락 속에 위태로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위원** 김 지부장께 다시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무도한, 정말 무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압수수색이 벌써 두 차례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직원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이전부터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둑이야’ 외쳤더니 도둑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외친 사람을 반복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롭히는 목적은 옳은 소리, 정의로운 목소리 용기 내서 하지 말라는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요.

○**한민수 위원** 맞습니다. 이제는 공익신고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받고 수사받고 괴롭힘당한다 이거를 모든 공직자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우리 방심위 직원들에게도 이 무도한 정권이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김준희** 저희가 입틀막 심의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직원들 다 입틀막하라는 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심위 내부에서는…… 저희도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모두에도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무도하다 한들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영속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 일정을 고려하여 질의 순서는 이훈기 위원님 하시기 전에 조인철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 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하시고 정동영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 우선 순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방송장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당이나 일부 쪽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합니다마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만 해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장악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보면 비슷한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동원된다는 거지요. 그 권력기관이 동원되는데 굉장히 사적으로 이용되는 또 공정한 일처리, 국민을 위한 어떤 합리적인 합법적인 처리라기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편파적인 권리 수단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공익제보자께서 고발하신 게 작년 12월 23일입니다. 맞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23일이고, 그런데 27일 날 방심위에서 형사고발을 합니다. 불과 4일 만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뭘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걸 조사했지요?

○**참고인 김준희** 4일 만이 아니고 이를 만입니다.

○**조인철 위원** 이를 만인가요?

○**참고인 김준희** 언론에 공개된 거는 작년 12월 25일이었고요. 이를 뒤에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들

어가서 고발을 했을 텐데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참고인 김준희 모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누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까?

○참고인 김준희 예.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방심위의 위원장 선에서 그냥 결정 난 건가요?

○참고인 김준희 바로, 언론 보도되고 바로 다음 날 위원장이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공익신고자와……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공익제보자를 ‘참칭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 민원인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런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바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조인철 위원 위원장은 그냥 조사도 없이 혼자 결정을 한 거네요? 공익제보자를 참칭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다라고 사전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조사도 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참고인 김준희 예, 그런 조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 민원인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과를 한 셈이거든요.

○조인철 위원 저도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판단 없이 조사 없이 그냥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지시가 없는 한 실무자들이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사항 같아요. 그런데 실제 오늘 지부장님 말씀은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내부에 특별 감찰을 지시한 것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여기는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이 압수수색은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잘못된 게 공익제보자가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게 먼저입니다. 먼저고 형사고발한 거는 그다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한 거는 1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먼저 여기에 먼저 이루어지고 공익제보자 민원사주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 이미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봄으로 하는 게 훨씬 검찰도 합리적인 순서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참고인 김준희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경찰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여당 간사님께서 법원을 잘 지켜보고 했으면 되겠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경찰은 그 순서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공익제보자를 우선 보호한 다음에 아니면 여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익보호자를 보호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치는 전혀 없이 경찰은 거꾸로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참고인 김준희 예.

○조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 권력이라고 하는 게 방송장악을 위해서 거의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증빙인 겁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7월 달에 결과가 옵니다. 그렇지요, 방심위에?

○참고인 김준희 예.

○조인철 위원 방심위로 결과가 오는데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런 경우가…… 권익위 측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자 실무적으로 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조사해 봐야 된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지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없는 일이 갑작스럽게 생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막판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방심위하고 권익위의 누군가와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유선상으로라도 통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심위 나오신 분 중에 이 담당 계신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조인철 위원 이 담당이신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방심위 기조실장입니다.

○조인철 위원 협의하셨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어떤 내용……

○조인철 위원 7월 9일 날 권익위에서 최종 통보를 하지요,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방심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공익제보자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그건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나와 있는데 그건 감사실 소관이라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조인철 위원 감사실 소관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7월 23일 날 그 권익위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왔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문 보내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실무적으로라도. 그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그건 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거 는……

○조인철 위원 모르신다는 이야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권익위 쪽에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권익위나 경찰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목표, 이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를 한 게 아니고 민원사주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범법자다라는 사전 결론을 내리고 나서 경찰과 권익위는 거기에 짜맞추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권익위나 방심위나 처지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 권한을 가진 15명 또는 9명의 위원들이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됐든 아니면 출세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됐든 그들이 모든 것을 그냥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또는 방심위 직원들은 그 업무에서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철 위원**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 혼자서 자기가 민원사주를 해 놓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각종 경찰과 권익위라고 하는 권력기관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어떤 치부를 감추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훈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민원사주 사건이 대한민국 방심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와 대통령실, 방심위가 합작품을 만들어서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었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4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는 국기문란’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대통령실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인터뷰가 최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공식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 270건이 방심위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통위와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압박에 의해서 많은 다량의 민원이 접수가, 270건이라는 다량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127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지인, 관련 단체의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민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님, 언론노조가 수십 년 동안 언론장악에 맞서서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지금 벌어진 이 민원사주 사건에 대해서 언론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윤창현** 여러 가지 대목에서 저는 이 사건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民間 독립기구의 형식이지만 방송의 공공성 또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 방송심의라는 제도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민원사주 등을 통해서 정치·표적 심의를 통해서 내려진 제재조치 29건이 전부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실·정치 심의가 남발되면서 방송심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끝괴시켜 버렸습니다.

또 한 측면은 류희림 씨를 포함해서 최근 언론공공기관에 비슷한 성향을, 이념 성향을

지난 관변 언론단체 출신들이 곳곳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방송심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봉괴시키면서까지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그 대가로 다른 형태의 공직으로 보상을 받고 역대의 국민 혈세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익을 취하는 거대한 이권 카르텔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방송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켜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들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민원사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경찰에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만 류희림 씨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사주한 시점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경과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자연시킴으로 해서 통신기록 확보 등이 불가능해지고 경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방조하고 증거 인멸을, 증거 인멸에 경찰이 사실상 가담한 것으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좀 더 가면 더 놀라운 것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회피해야 되는데……

PPT 보시지요.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날은 내부 직원의 ‘심의 왜 회피하지 않냐’는 공식 문제 제기도 묵살했고 그리고 직속 부속실장을 시켜서 게시글을 내리라고 압박을 했고, 또 10월 12일에는 김유진 방심위원이 소위 석상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것도 묵살이 됐고 그리고 나서 과태료 등 중징계 폭탄을 터뜨리고.

그래서 저는 방심위가 방통위, 대통령실 등과 공모한 매우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악질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색출한다며 강제 수사력을 동원했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일본 현병대와 친일 순사를 보는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분들이 대표발의한 류희림 방지법,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방심위원장의 이런 행태와…… 방심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류희림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준희 참고인,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가족, 지인들 약 4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우선은 류희림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직원이 좀 이상하니까 구글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구글 검색하니까 류희림 씨와 쌍둥이 동생이 위원장 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9월 12일인가 13일에 성균관 단체에 같이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도 구글에서 류희림 위원장 동생 이름이 검색이 됩니까, 그 기사하고?

○참고인 김준희 이름 두 개를 같이 검색을 하면 지금도 상단에 노출이 되는데 그 기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류희림 씨 동생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기사에서 내용이 삭제돼 있

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PPT 좀 보시지요.

과거에는 류희림 위원장 동생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돼 버렸어요, 언제부터.

다음 PPT 하나 보시지요.

그리고 작년 9월 14일에 종편보도채널팀장의 보고 자료에도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돼서 삭제되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참고인 김준희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정 내용이 삭제된 게 증거 인멸 시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것은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동생 외에도 다른 지인들이 민원사주를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참고인 김준희 방심위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 이름이 아주 특이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류희림……

○이훈기 위원 그분이 박우귀라는 분인가요?

○참고인 김준희 예, 맞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류희림 씨가 대표로 있었던 미디어연대라는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는 공동대표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초로 9월 4일에 민원을 접수했고요. 방심위 직원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박우귀 씨하고 류희림 위원장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참고인 김준희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을 같은 시기에 다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민원을 취하했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취하했습니다.

○이훈기 위원 어떤 어떤 민원을 취하했어요, 그때?

○참고인 김준희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전해 듣기로는 9월 4일에 민원을 제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9월 14일에 종편보도팀장이 류희림 씨에게 보고를 한 직후에, 2시에 보고했는데 3시경에 사무처로 민원을 취하하겠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해 보면 조직적인 민원사주가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 민원사주를 알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직적인 은폐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준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이 문제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이 민원사주 의혹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민원사주 의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부분도 좀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준희 위원장님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참고인 김준희 아니요, 더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지난해 9월에 일어난 류희림 위원장 관련 민원사주 사건, 청부민원 사건은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고 구조도 너무 쉽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같이 일했던 지인 관계인 사람들 수십 명이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한 가지 비슷한 사안으로 방심위 민원을 신청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도대체 류희림 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자신의 지인 수십 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몰랐을까? 지금 몰랐다고 우기니까 다 백 보 양보해서 본인이 몰랐다고 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이런 친인척이 제기한 민원이 있으니 방심위원장은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한다라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팀장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 심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부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리라고, 내부 기관에도 알리고 또 권익위 등에도 알리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청부민원의 여러 사례 중의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경주엑스포 관계자—류희림 지인입니다—이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물음표, 오타가 찍힌 겁니다. ‘뉴스타파가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신학림 씨로부터 일방적인 어쩌고저쩌고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 데 대해’.

이 경주엑스포 관계자랑 전혀 무관한 류희림 동생의 수련원 강사, 이 사람이 적어 낸 민원 내용 좀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는 사람이 별도로 신청을, 작성은 하는데 이렇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둘은 로봇입니까?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물음표 오타까지 똑같아요. 노란색으로 지금 표기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쓰지요? 텔레파시가 통합니까? 이 경주엑스포 관계자랑 수련원 강사가 쌍둥이예요?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경찰은 이 의혹을 파고들지 않고 신고자를, 민원 제기자를 색출하겠다고 압수수색까지 해요?

윤창현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언론노조가 고발했지요?

○참고인 윤창현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언제입니까?

○참고인 윤창현 올해 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만 여덟 달이 지났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지요?

○참고인 윤창현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윤창현 일단 저희가 고발인인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압수수색은 당연히 없었겠네요?

○**참고인 윤창현** 당연히 없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류희림 위원장의 휴대폰만 압수해도 사실관계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경찰이 신고인 찾겠다고 지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김준희 지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보면 지금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이런 민원사주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야 됩니까?

○**참고인 김준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했을 때 공익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방심위 임직원 행동강령에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권익위 등에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지금 김준희 지부장 말씀대로 법이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15조에 누구든지 그러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하물며 그 기관의 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참고인 김준희** 예.

○**노종면 위원**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의 이름으로 이 신고자 색출해 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맞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 보 양보해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수사기관에 접수돼 있는 겁니다. 민원사주의 의혹을 밝혀라, 또 정보를 유출한 책임자를 찾아라,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치더라도 왜 경찰은 신고자 찾는 일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압수수색 진행된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준희 지부장께요.

9월 10일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9월 10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에 경찰들이 한 4명씩 찾아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핸드폰 압수를 했고요. 집 안에 다 열어 보고 PC, 노트북 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제가 출근을 좀 일찍 하는데 방심위 사무실에도 7시 조금 넘은 시각에 제가 세어 본 것만 19명의 수사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서초동에도 방심위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도 7명이 갔다고 하고. 그래서 다 합하면 그날 38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난 1월에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실 압수수색만 있었던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방심위 직원 세 분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

○**참고인 김준희**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방심위 목동 사무실 그리고 서초동, 그리고 방심위 직원 세 분의 자택, 총 5곳에 대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참고인 김준희**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최소 한 8장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택에 찾아간 경찰들은 사전에 출근 동선이나 시간들도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근하려고 문 열고 나오는데 바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혹시 류희림 위원장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오로지 공익제보자 색출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영장 보셨나요?

○**참고인 김준희** 봤습니다.

○**노종면 위원**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시되어 있던가요?

○**참고인 김준희**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불공정한 수사, 공익신고자를 때려잡겠다고 경찰이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심각하게 의심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권력 차원에서 뭔가가 작동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류희림 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류희림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검경 인맥을 통해서 뭔가 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 이 정권하에서 막강한 위세를 휘날리고 있는 법조 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류희림 위원장이 YTN의 고위 간부로 있던 시절에 형사사건 한 가지에 연루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화면은 그 사건의 공판이 진행 중인 그 시기에—2011년입니다—그때 고가의 공연티켓을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합니다. ‘티켓로비’라고 명명돼서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김준규 검찰총장님께’ 이렇게 쓰인 그대로입니다. 받는 사람을 김준규 검찰총장 등등, 그 당시에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류희림 씨가 보냈습니다. ‘류희림 배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편지를 보이시지요. 이건 편지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전달자에게 ‘잘 좀 부탁해’라고 적었습니다. 류희림 씨 친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혀 있는 정보를 주목 해 봐 주십시오.

PPT 넘겨 주세요.

류희림 실장 관련 노종면 명예훼손 사건 2심, 사건번호, 담당 검사, 공판일까지 적어서 검찰총장 등에게 티켓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수사가 어떤 힘이 작동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심각히 우려되고 의심스럽습니다. 해서 반드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려서 경찰 관계자들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 자료에 없는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 계신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받으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희가 중인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오늘 왜 하필이면 4명만 나오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다른 분……

○위원장 최민희 왜 기획조정실장, 방송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4명만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다른 분들은……

○위원장 최민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다른 분들은 회의라든지 개인 일정으로 못 오는 사람들은 못 왔고요. 나머지 실·국장 중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배석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조직은 노는 데예요?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아니, 휴가가 아닌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중인과 관련하여 류희림 위원장 왜 안 나왔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오늘 오전 10시에 통신소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민희 지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기다릴 수도 있어요.

류희림 위원장 오후에 휴가 낸 것 사실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감사실장, 국제협력단장, 거기도 별일 없지요,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휴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하필 오늘 휴가 냈어요? 언제 냈어요? 기획조정실장이 이것 하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휴가는 보통……

○위원장 최민희 언제 냈어요, 오늘 휴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총장님께서 결재하셔서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어제쯤 냈을 것으로 압니다. 휴가 내면 보통 하루 전에 냅니다.

○위원장 최민희 휴가 내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장과 국제협력단장은 명절 연휴를 길게 쓰려고 오늘 휴가를 냈어요. 간부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 조직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어떤 개인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그 얘기 왜 하세요? 지금 그 뒷얘기 왜 붙이셨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저희들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답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 개인 사정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개인 사정을 알아서

오든지…… 지금 여기 장난하십니까? 제 질문이 우습습니까? 우스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희** 사무총장은 왜 안 나왔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사무총장도 지금 휴가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보세요, 저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위원장 오후 휴가예요. 감사실장 휴가예요. 국제협력단장 휴가예요. 사무총장 오늘 하필 휴가예요.

네 분은 휴가 가시지 왜 나오셨어요? 그냥 순서대로 자르다 보니까 위는 다 휴가 가고 네 분 나오셨어요? 그런데 감사실장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휴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분들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오신 것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국장급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회에 안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기조실장과 주고받은 이 대화가, 질의응답이 오늘 저희가 방금 뒤에 왜 이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는지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사주 등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 안건은 방심위 민원사주 등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 따라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용어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의결하기 직전에……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민원사주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걸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민원사주가 뭔가. 모르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이해 못 합니다, 민원사주. 그리고 사주라는 말이 회사 사주로 오독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 본질은, 요즘 추석 벌초대행 있잖아요. 성묘철인데 벌초대행을 많이 하는데 이게 고발대행이란 말이에요. 또 이건 청부한 거지요, 동생, 가족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청부고발’ 내지는 ‘고발대행’ 이렇게 돼야…… 공자 말씀도 정치는 정명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로잡히는 거니…… 민원사주는 또 전에 무슨 ‘사주’ 자 붙은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제가 긴급 제안을 합니다만 민원사주를 ‘고발대행’ 내지는 ‘청부고발’로 이

렇게 해야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위원장 최민희** 수석전문위원님, 이런 경우 제가, 지금 이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저분들께 자문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어쨌든 의견 들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보기에는 이 네이밍 관련하여 전문가 두 분이, 위원장들이 앓아 계시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방송심의국장, 특히 방송심의국장은 이것 어떤 명칭인지 잘 아실 것 같아서……

민원사주와 지금 정동영 의장님의 말씀하신 고발대행, 대행고발?

○**정동영 위원** 고발대행 또는 청부고발, 둘 중의 하나……

○**위원장 최민희** 청부고발.

○**노종면 위원** 고발은 아니니까 청부민원.

○**한민수 위원** 청부민원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청부민원.

제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뜻은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발은 아니니까 ‘청부심의’라는 단어도 저희가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청부심의’, ‘민원사주’ 두 단어를 가장 많이 써 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심의국장님, 어느 게 더 뜻이 명확합니까, 뜻? 보통 방심위에 민원 넣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방심위에 민원 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부에서 민원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 최광호**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민원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 최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2분 그냥 드리세요.

○**김우영 위원** ‘청부민원 등’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야 된다고 보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 탄압 사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준석 위원님, 이런 것 전문가시잖아요. 사실 위원장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한민수 위원** 의견을 주세요.

○**이준석 위원** ‘청부’ 이런 게 너무 세면 ‘셀프’ 하면 되긴 되는데……

○**위원장 최민희** 저기 드리세요, 두 분.

이준석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이준석 위원** ‘청부’ 이런 게 너무 무겁고 그러면 ‘셀프’ 이런 것도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아까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공식적인 그게 돼야 되니까요.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은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민 위원**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민원대행은 돈 받아야 되지 않아요?

간사님, 김우영 위원님 의견까지 다 종합해서 빨리 네이밍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고발이 아니라니까 '청부민원'이 정확한 이름 같습니다, '청부민원'.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청부민원 등……

○김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최민희 저기 드리세요.

○김현 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요.

○위원장 최민희 등의 진상규명, '의'가 좀……

○한민수 위원 그러면 길면요 '진상규명을 위한'에서 '을 위한'을 빼면 됩니다, '진상규명 청문회'. 데스킹을 제가 오래 봐 왔어요.

○위원장 최민희 이 명칭에 관하여는 제가 자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안받은 것을 제가 명칭 정리를 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려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희가 요구하고자 하는 증인에는 류희림 위원장 등을 포함한……

○김현 위원 1명 추가요.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류희림 위원장 등을 포함한 방심위 관계자 그리고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윤정근 양천경찰서장 등,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 등등이 포함됩니다.

김현 간사님, 추가하실 분 말씀하시지요.

○김현 위원 직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미애 방통위 현재……

○위원장 최민희 이제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김현 위원** 예, 오늘 승진했다는 설이 있어서……

○**위원장 최민희** 동의하십니까, 좌미애 과장? 뭐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김현 위원** 지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좌미애……

○**위원장 최민희** 예, 좌미애 과장 추가하겠습니다.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이준석 위원** 의견……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이준석 위원**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마 수사 개입의 프레임이 나올 가능성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랬을 때 지금 22번부터 27번까지 보면 경찰청장과 반부패수사대장 정도는 저희가 정무적인 인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밑의 과장, 팀장, 경위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 때 혹시 그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위에 있는 한 둘, 셋 정도만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수사 외압 프레임이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타당한 지적이고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없이 그냥 접수 합니다.

이것 이준석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정리합니다. 지금 이준석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접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9월 30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금 이준석 위원님과 김현 간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9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과 김현 간사님의 제안을 수렴한 결과를 받아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

(11시14분)

○**위원장 최민희**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 압수수색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결코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는 중대 사건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 주요 관계자들은 휴가와 개인 일정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진실을 가리고 한없이 추하고 추한 그 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함을 다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민원을 세상에 알린 한 용지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법원이 KBS 이사 추천·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정상화에 대한 한 가닥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법원 또한 방통위가 무리하고 뻔한 의도로 기피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패닉 상태의 이른바 패닉 정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패닉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민심을 잃은 정권은 언제나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서 반전을 꾀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권력의 착각입니다. 무리한 수사와 비극적인 정치 보복, 짓밟힌 인권의 현장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심판합니다.

2024년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 봐 주십시오. 방심위 공익신고자 압수수색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응급실의 뺑뺑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불통의 의료개혁, 헌정 사상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최초 국회 개원식 불참 등등 이 모든 일들이 집권 3년 차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보셨을 겁니다. 여소야대의 성적표를 받았으면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고 국회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이 각료들에게 ‘전사처럼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총리부터 장차관들은 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 내부에서부터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집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도 바로 이 같은 윤석열 정권 3년 차 공직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비판 보도를 틀어막는 첨병이 되었습니다. 그런 류희림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희림 민원사주, 청부민원의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 과거 직장 동료, 단체 관계자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정권의 모든 권력들이 류희림 한 사람을 지키고 공익제보자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입니까?

우리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9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낱낱이 파헤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과도한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선택적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요.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수십 명이 나와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분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딱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천경찰서에서 지금 8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이 아래도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현 위원 언론노조 등 4개 단체가 처음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 11월이었잖아요?

○참고인 김준희 예.

○이정현 위원 그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10개월째……

○참고인 김준희 양천경찰서에 고발이 3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랬지요.

올해 1월 18일에도 또 민원사주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고발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경찰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제보자 탄압하고 입틀막 하고 류희림 위원장은 그냥 그대로 봐주겠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참고인 김준희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방향이 지금 결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김준희 지부장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참고인 김준희 양천경찰서에 지난 2월 2일 그리고 최근 9월 5일에 참고인 조사를 잤다 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던가요?

○참고인 김준희 2월 달에 조사할 때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고 작년 9월 14일 종편팀장의 보고 내용 그리고 9월 27일 직원이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게시물을 올린 경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관은 본인은 수사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류희림 씨를 압수수색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8개월, 7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시민단체와 노조가 함께 양천경찰서 앞에서 수사 방치, 수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 그래서 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이번에 갔는데 가서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양천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처음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겠다는 어떤 뉴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수사 의지가 꺾였다고 봐야 되겠군요?

○참고인 김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왜, 누가 그 수사 의지를 꺾었을까요?

○참고인 김준희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분명히 꺾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참고인 조사를 최근에 또 받으신 거군요?

○참고인 김준희 예.

○이정현 위원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던가요?

○참고인 김준희 이번에 급하게 참고인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해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려나 보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사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수사 의지가 없구나, 이 사건의 본질이…… 불이익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수사관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민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참고인 김준희 그럴 가능성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실제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이것은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금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요.

수사 개시 시점에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청장이었잖아요?

○참고인 김준희 예.

○이정현 위원 이분이 경찰청장으로 승진을 했군요?

○참고인 김준희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 갔던 분이

었고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했네요. 2년 사이에 경무관에서 치안감이 되고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렇게 하고 경찰청장이 됐어요.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이렇게 줘도 되는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앞으로 경찰 수사에 희망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지금 별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인 김준희 우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는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김준희 위원장님, 압수수색을 몇 시간 했어요?

○참고인 김준희 방송회관 사무실에서만 계산을 했을 때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 정도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동원된 수사인력이 대충 몇 명이었나요?

○참고인 김준희 저희가 파악한 것은 38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40명이네요?

40명이라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과거에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동원된 수사인력이 40명입니다. 또 MBC 광우병 보도 수사한다고 그때 투입한 수사인력이 압수수색 40명이었어요. 이번에 류희림 위원장 개인이 고발한 이 사건에도 또 40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는데 좀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부민원, 청부고발한 것을 언론노조에서 지난 1월 달에 고발을 했는데 피고발인, 그러니까 류희림 씨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하더라도 요식행위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결국 국민 여론이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 여론의 눈치를 보면 어쨌든 류희림 씨를 불러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한 사람을 경찰이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압수수색한 격이라고 했는데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김준희 처음에 공익신고가 작년 말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류희림 씨가 제보자 색출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경찰청은 3주도 안 되는 시기에 1차 압수수색을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방심위 직원들이 149명이 다 같이 공익신고자가 됨시다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명으로 류희림 씨를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방심위에는 149명의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실제 류희림 씨의 그 민원사주 행각을 밝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 색출해서 징계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이 모든 수사, 편파 수사와 선택적 수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오남용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방심위 구성원들로서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정동영 위원** 청부민원에 동원된 류희림 씨 가족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참고인 김준희** 이게 대략 4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동영 위원** 이것도 40명이에요?

○**참고인 김준희** 그런데 그것은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된 추정치일 뿐인 것이라고요. 실제로 구글에 안 나오는 가족과 지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동원된 가족과 지인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청부민원 건수는 몇 건이지요?

○**참고인 김준희** 대략 100여 건 정도로, 지금 확인된 것만 100여 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얼굴이나 실명이나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공개됐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공개된 적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향신문, MBC, 이데일리, 6개 언론사와 기자들 이름을 검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매체들이었어요? 뭘 검색했어요?

○**참고인 김준희** 그게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이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와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검색어들, 키워드들을 막 입력을 해 가지고 PC 안에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뒤에서 좀 참관을 했고 직원들이 참관을 하면서 보니까 민원인들 이름도 넣는 것 같고 그중에 기자 이름들도 넣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MBC 기자, 경향신문 기자……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한 대여섯 명 정도 기자를 입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동영 위원** 조금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결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위원님들도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만 방송심의위원회 예산 가운데 지금 방송 심의하면서 71억을 2023년에 썼어요, 내년도에 계상된 것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심위의 부처활동비 예산 59억 해서 130억,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그래도 뭐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 예산 심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임금과 월급과 기본경비는 손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방송 심의와 관련해서 어쨌든 인터넷 언론매체 또 콘텐츠에 대해서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비용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검열과 관련해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군부가 1980년에 12·12 사태를 통해서 계엄령을 발하고 서울시청에 검열본부를 설치했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강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신문이든 방송이든 보도가 될 수 있었고 빨간 펜으로 그어 버리면 그것은 폐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강 보좌관 나중에 실명으로 밝혀진 이름은 이상재 준위였습니다, 이상재 준위. ‘전두환에게

이상재 준위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는 류희림 준위가 있다'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 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검열과 심의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김준희 법적으로는 사전 검열이냐 사후 심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느냐 입틀막을 하느냐 그 의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위원 기본적으로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방심위에서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를 내리고 있는 건 검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참고인 김준희 그렇게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됩니까?

○참고인 김준희 권력자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언론을 쳐별하는 심의가 자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29건 전부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된 상태고요.

○정동영 위원 지금 방심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쯤 되지요?

○참고인 김준희 평균 연봉은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 평균 연봉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요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연봉만 놓고 보면 한 2600만~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동영 위원 신입사원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참고인 김준희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정동영 위원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이 얼마인 줄은 알고 계세요?

○참고인 김준희 1억 9500만 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참고인 김준희 매년 높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뭐 류희림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에 방심위에서 위원장 연봉을 과도하게 매년 인상을 해 온 문제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무총리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참고인 김준희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총리급 연봉을 받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현안질의에 방통위, 방심위의 책임 있는 자들이 모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연봉 1억 4000을 받고 있으면서 'MBC를 민영화해서 민주당이 가지라'라는 어떤 칼럼의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입맛대로 탄압하겠다는 의중을 자기 SNS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MBC를 계속 수중에 두고자 하는 좌파진영의 총력전이 일단 성과를 거두었다. 강재원

역시 국제인권법 출신이다. 이게 다 김일성 교시 때문이다'라는 끔찍한 매카시즘을 부활시키더니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은 국회 출석을 또 다시 거부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마저 마치 짬짬이하듯 현안질의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는 공직자의 국회 출석은 헌법상 의무 규정입니다. 이진숙의 전철을 밟겠다고 대국회,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국민께서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며 사실상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불신임하는 수준에까지 온 것입니다. 길어도 3년도 남지 않은 짧은 시간 그리고 처벌과 책임의 시간이 3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김준희 지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아니면 혹은 청부민원 사건이 9개월 가까이 오리무중입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양천경찰서는 5월 8일 수사협조의뢰 첫 공문을 방심위에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발 접수 후에 이미 네 달이나 지난 후입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앞서도 드렸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정말 실소가 나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빠른 표적 수사, 입틀막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수십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을 털털 털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반향을 하면 재미없다 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익 보호자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62조는 누구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류희림 위원장의 오물을 은폐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심기 보좌를 위한 십상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심위는 셀프 민원 사안에 대해서 셀프 조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건희권익위로 추락한 권익위가 방심위에 민원사주 사건에 대한 조사를 떠넘겼는데 이는 사실상 방심위가 알아서 묻어도 된다라는 윤허를 받은 것 아닙니까? 방심위 감사세칙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감사대상 범위에 포함됩니까?

○참고인 김준희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세칙상 감사대상은 사무처 각 부서와 그 직원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사무처만 감사실의 감사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감사조차 위원장이 시행,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김준희 위원장이 감사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방심위는 왜 갑자기 관련 내용을 또 감사하겠다고 나서서 입장을 바꾼 이유는 또 뭘까요? 위원장의 셀프 조사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참고인 김준희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황정아 위원 지부장님, 방심위 감사세칙에 따르면 감사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감사원들이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 또는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 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

겠다.

지부장님, 현장에서 보시기에 위원장 감사가 외부 압력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지부장님, 지난 7월 29일 감사실에서 전결권자 지정문서를 만들고 류희림 위원장이 직접 결재를 합니다. 최종 전결권자로 누가 지정됐는 줄 아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방심위에서 이 가벼운 내용조차 확인을 해 주지 않았지만 지난 7월 29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한 사람은 이현주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사무총장이 최종 전결권자로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결재가 그렇게 됐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이현주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사무총장으로 직접 발탁한 사람으로 사실상 류희림 위원장의 아바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KBS 재직 당시 류 위원장과 기독교신자모임에서 같이 활동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민원사주 증거자료 제출 시도까지 거부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쌈짬이 수사가 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부장님께서도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말씀하신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박종현 실장도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때 동고동락했던 사무총장직무 대행이었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황정아 위원 노조에서 박종현 실장이 류희림 위원장 감사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피신청 했었지요?

○참고인 김준희 기피신청 했는데 거부로 회신받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누가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 확인·점검자는 이현주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역시 또 이현주 사무총장이지요.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정권에 부역하는 자들은 수사할 생각조차 없으니 저렇게 당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부장님, 방심위가 이렇게까지 쳐참히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 전에도 저희가 썩 그렇게 잘해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알아야 할 방심위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홍위병이 되고 있습니다. 셀프 조사를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사무총장을 감사 라인에서 배제하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2018년 강상현 방심위원장 당시 평창올림픽 관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회에게 조사 권한을 일임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있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셀프 조사를 전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 보니 감사실이 마치 류희림 위원장의 황제 조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심위가 ‘건희심기 위원회’로 불려서야 되겠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방심위는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60조에 따라서 60일 안에 자체 조사를 마치고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알려 줘야 합니다. 9월 23일이 그 기한입니다. 그 기한 안에 일이 바로 잡힐까요?

○참고인 김준희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법상으로 60일 이후에도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심위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은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권익위는 아무 판단을 안 하고 그 판단을 방심위로 미룬 상태인 것이고 제 생각에는 권익위가 자기 손 더럽히기 싫어서 떠넘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떠넘긴 것을 방심위가 넘죽 ‘우리가 셀프로 면죄부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9월 23일에도 민원사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방심위의 감사실과 사무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을 셀프로 은폐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방심위의 불법적 행태에 앞으로 저희 과방위에서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지금 참고인 중에 방심위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네 분 나오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다 휴가 가시고 어떤 분들이 지금 네 분 나오셨다고 하셨지요, 정확한 워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오늘 나온 네 분들은 특별히 휴가 일정이 없고 국회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한, 실·국장 8명 중에서 남아 있는 4명이 왔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까 전하고 살짝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나와 있잖아요. 여기 국회의원들은 지금 시간이 남아돌아서 나왔을까요? 총알받이로 나와 계신 분들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이 질문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방심위 한곳을 위한 시간을 모두가 냈는데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고 답변을 하실 수 없는 분들만 이렇게 나와 계시니 나와 계신 분들도 참 안됐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 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제가 생각하는 기관장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라고 고발을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저번에 봤더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회피 요청에 대해서 셀프 각하를 하더니,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유유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

이 가진 권력 아니면 공권력을 참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자는 이번 일을 두고, 방심위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싶지만 ‘공안정국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 때 증인 29명 의결했습니다. 증인분들 제대로 나오면 그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정할 게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 등에 관하여 아까 계산할 때 2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윤정근 양천경찰서장을 포함하여 증인이 30명, 참고인이 6명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기조실장님, 요즘 딥페이크 범죄 관련한, 그 관련 실무국장은 누구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입니다.

○김우영 위원 오셨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안 왔습니다.

○김우영 위원 안 왔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김우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의 어떤 인권이 달려 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내지는 모니터링 그런 업무를 방심위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지금 현재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 예산에 아마 증원해 달라고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 예산, 인원이라든지……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았던, 특히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가 그런 범죄의 도구로써 이용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사하고의 업무 협조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제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될 방심위가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민원사주나 하고 앉아 있고……

지금 권익 무슨 국장님 오셨지요? 권익국장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권익보호국장입니다.

○김우영 위원 권리 보호는 누구의 권리인지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장 오인희 저희 국에서는 이용자들의 권리와 또 특별히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지금 방심위가 소위 시청자들, 국민들의 말할 또 알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 자유를 증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독립행정 민간기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장 오인희 예, 맞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정권의 안위와 연관된 방송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명으로 의심되는 그런 민원을, 특히나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지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민원을 넣었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 심의를 해 가지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권익국장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장 오인희** 저희 국은 접수된 민원을 해당 실국에 이첩하는 그런 업무가 들어 있는 민원상담팀이 있고 나머지 심의나 이런 것은 또 해당 국에서 실시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류희림 씨의 친지나 가족들이 민원을 내면 그 민원 낸 것에 대한 최초의 확인과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장 오인희** 저희 민원상담팀에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방송 내용이랄지 방송 일시랄지 그런 요건이 확인되면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누구인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된 민원은 해당 팀으로, 심의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9월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사주로 의심되는 그러한 민원들을 우리 직원들이 발견을 한 거지요.

지부장님, 그때 류희림 씨의 동생 내지는 친지로 의심되는 그러한 이름을 최초 발견해서 게시판에 올리거나 한 사람이 누구지요?

○**참고인 김준희**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고요. 9월 27일에 ‘류희림 위원장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게시물을 올린 직원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김준희** 그 직원은 동생과 아까 말씀하셨던 정년퇴직한 박 모 전 방심위 국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고 칩니다. 자기의 동생이나 아들 혹은 친지가 그런 민원을 넣는지 전혀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공직자는 스스로 청렴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급 직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심되는 어떤, 당신의 가족 내지는 이런 게 의심된다는 정보를 주면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인 김준희**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참고인 김준희** 처음에 보고는 비공개로 팀장이 보고를 했었을 테니까, 잘 찾았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보고한 동생 민원만 철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한 명만 걸렸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고 그 민원들을 뒤늦게 다시 취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였지요.

○**김우영 위원**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직원은 그 의무에 따라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참고인 김준희**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든지 격려하든지 또 본인이 당당하다면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거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인 스스로는 기피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결행위를 하거나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직무대행

이었나요, 그런 분들한테 인사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관련자 문책하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영 위원 이것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 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그러므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을 어기고 심의기구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인 김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도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인데, 거기에 김태규라는 부위원장이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방송장악기도위원회가 됐고 심의위원회는 보도지침 시대에나 적용할 법 한 그런 심의 기준을 가지고 솜방망이만도 못한…… 으악 죽이는 겁니다, 으악 죽이는 거. 그렇지요?

솔직히 방심위 직원들도 직장인이고 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에 대한 공익신고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엔간해야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도, 여기 네 분 나와 계신 분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분이 결단하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당장 위세에 의해서 일정한 인사상의 침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복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익국장님, 방심위의 직원 일동이 함께 성명을 내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함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하고 기이하기까지 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나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돌아오셔 가지고 방심위원장 더 이상 추한 꼴 보이기 전에 사표 쓰라고 집단성명 좀 내십시오. 답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9월 10일 날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행이 됐고 방심위 목동 사무실의 지상파방송팀, 화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그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하고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잖아요, 위원장님?

○참고인 김준희 예.

○김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혹시 변호사 입회나 조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심위 차원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나요?

○참고인 김준희 방심위 차원이 아니고 노조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방통위도 유사하게 감사원 감사와 그다음에 검찰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별히,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하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압수 수사의 대상이 된 직원들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노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통상 셀프감사 말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이나 혹시 상황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을 요청받은 게 있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김현 위원 사실 이전에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발동해서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참고인 김준희 회계검사였습니다.

○김현 위원 회계검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이 청부민원에 대한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1차 검찰의, 그러니까 경찰에 의한, 검찰에 의한…… 그때 경찰이 한 압수수색이었습니까, 1차도?

○참고인 김준희 예.

○김현 위원 그 이후에 2차까지 진행되도록 최근 9월 12일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도 사실은 저희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방심위와 방통위가 출석해서 몇 번 증인으로도 나왔는데 그때 주로 얘기했던 게 경찰에 고발이 돼 있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선상에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예.

○김현 위원 그리고 외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만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정도의 일들이 2008년 방심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일인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이렇게 청부, 사주가 있었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참고인 김준희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물론 여러 차례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결국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그 이후에 있을 재허가·재승인 과정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가짜뉴스심의센터가 9월 달에 마련돼서 100일가량 운영이 됐는데 그 조직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 사무총장이 나와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참고인 김준희 작년에 임시기구로 설치했던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나중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신속심의센터로요. 저는 그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혼란식 하기 위해서 운영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어서 비판 언론들에 대해서 입을 막으려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업무를 시켰지만 그 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이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고충처리 과정에서 임시기구 운영은 중단이 됐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반발을 해서 그 조직의 운영이 중단된 거지 역할을 다했거나 이후에 조치가 취해져서 그 기구가 없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김현 위원** 그리고 지금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최초 민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미디어연대도 류희림 위원장이 한때 몸을 담았던 그런 조직인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류희림 씨가 대표였고요,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그다음 공동대표입니다.

○**김현 위원** 공동대표가 한 거고. 이분도 사실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맞습니다. 전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요.

○**김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정 제재하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행정청에서 마지막으로 의결을 하고 법원에 가서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도 어찌 보면 방심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초의 일이고……

○**참고인 김준희**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단기간 안에 이렇게 무도한 일이 벌어진 것도 최초의 일이고.

결국은 말씀대로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비서실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쌍두마차로 하면서 언론에 대한 탄압, 재갈을 물리고 그다음에 방심위 직원들을 양심을 저해하는 행동에 가담토록 한 류희림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동의합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김홍일 전 위원장 때였고, 그다음 이상인 직대 그리고 지금 김태규 직대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사실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갖고 방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힘들지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갤럽 지지율 여론조사가 취임 후에 최저치로 20%대를 했고 이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 민생, 물가, 소통 미흡,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지만 결국은 언론이 제때 보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언론을 장악해서 문제가 없는 언론사, 제대로 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방심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2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첨병으로서 류희림 위원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던 심의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최근에 3인 체제 방심위가 시작되고 나서는 제가 보기에는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법원에서 29연패를 기록 중이지 않습니까? 3인 체제 방심위에서 새로 법정 제재 의결을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만약에 했다가 소송이 걸리면 이 3인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 줄 텐데,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앞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라고 적시된 영장이 있었고,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지난 9월 10일 날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지금 방심위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요.

○**참고인 김준희** 저희가 압수수색이나 경찰 수사를 막고 거기에 저항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이후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윤창현 위원장님 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윤창현**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청부민원, 류희림 개인의 범법행위를 수사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방심위를 넘어서서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건에서 방심위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사건의 실체와 내용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한다면 수사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든 무엇이든 추가적인 조치가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기획조정실장, 마이크 한번 잡아 보세요.

지금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무리한 심의를 해서 29건이 법원에 갔는데 29전 29패예요.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예.

○**위원장 최민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안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 얘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집행정지에서는 29연패는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어쨌든 집행정지 당했잖아요. 일단 29전 29패잖아요.

안 창피합니까? 답해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종육** 위원님들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뭘 위원들이 심의했다고 그래요?

최광호 방송심의국장 답해 보세요, 29전 29패. 또 본안소송 간다 이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방심위 사상 있었어요? 29전 29패 있었습니까? 그냥 짧게 답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국장 최광호**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권익보호국장, 마이크 잡고 답해 보세요.

29전 29패, 창피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 방심위에서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장 오인희** 이렇게 많은 소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소송 이전에 편파 심의, 표적 심의, 잘못된 심의가 있었으니까 소송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말 돌리지 마세요.

창피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고요. 29전 29패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익보호국장 오인희**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책연구센터장 답변해 보세요. 그래도 좀 객관적인 입장이잖아요.

29전 29연패 이런 일 있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책연구센터장 한명호**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사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교육 NEIS 정보를 활용한 일 있습니까?

○**참고인 김준희**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괴담이 돌고 있는데 방심위의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신원을 알기 위하여 불법적 행위를 했다,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전산망을 활용했거나 교육 NEIS 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

○**참고인 김준희**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앞으로 이런 괴담이 돌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행위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인지 시점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언제 인지했느냐. 이게 뭐와 연결되는지는 아시지요? 이것은 내부 규칙의 위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의 2023년 9월 14일 종편보도팀장이 장경식 단장에게 이상하다라고 보고했지요?

○**참고인 김준희** 종편보도팀장이 당시에 장경식 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 장경식 팀장에게 보고했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하려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보고한 줄 알았는데 장경식 단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사실입니까?

○참고인 김준희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도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류희림 위원장은 인지했을 것이다,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9월 27일 날 인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그 9월 27일은 어떤 날인지 알지요?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가 ‘류희림, 왜 이 안건 회피 안 하느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참고인 김준희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최민희 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김준희 거론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거론이 됐는데……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안 한다,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참고인 김준희 인사위원장은 사무총장이고 소집권자도 사무총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현주 사무총장이 임명되기 전이어서 박종현 현 감사실장이 사무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이 아무리 본인에게 인사위원장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거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대개 위원장이 다 압니다, 인사위원회 소집되면. 왜냐하면 어쨌든 방통위가 아니라 여기는 방심위라 최종인사권자가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신분이 민간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모르게 열겠다 혹은 열까 이럴 수 없습니다. 사무총장이 그렇게 일하면 잘립니다. 이게 두 번째 시점이에요. 류희림 위원장은 게시물을 봤을 것이고, 게시물을 인지했고, 그래서 청부민원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듣다 보니 이전 방심위도 일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류희림 체제와 이전 방심위 체제의 근본적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준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된 위원들 간의 성향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라는 조직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토론을 통해서 서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류희림 씨가 오고 나서는 그런 위원회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네요. 그냥 독임제네요, 독임제.

○참고인 김준희 현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지금 감사실장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관련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포함한 모든 것?

○참고인 김준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이 박종현 감사실장이 지난해 9월에 사무총장 대행이었나요, 그 시점에?

○참고인 김준희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이분이 이 청부민원과 청부민원 이후 처리에 관여했다고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관여할 수도 있지요?

○참고인 김준희 그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어느 날 류희목이라는 이름의 민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의심할 것 같아요. 류 씨가 일단 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류희’까지 같은 게, ‘류희림, 류희목? 이름이 너무 똑같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방심위 내부 담당 직원이 이 민원사주라고 알려진 청부민원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준희 누구였든지 간에 그 이름을 보면 ‘어, 궁금하네’ 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 보겠지요. 그래서 구글 검색 결과에 쌍둥이 동생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단지 기사만 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하고 있는 유교 관련 선플 무슨 문화원의 이메일 계정 도메인 이 같았던 것까지 아마 확인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중요한 얘기 하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서 마무리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준희 구글링을 해서 그냥 알아낸 게 맞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번호하고 이메일도 입력을 하니까 이메일 계정까지 이 사람이 정말 친동생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아까 NEIS하고 행정전산망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구글링으로 찾아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장께, 좀 전에 방심위 노조위원장이 답변할 때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자 이름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4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지요?

○참고인 윤창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렇게 넣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언론사명도 넣어서 검색했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윤창현 예.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자료를 가져갔다는데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살살이 뒤지는 일이 있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전 정권에서 봤습니까?

○참고인 윤창현 이건 사실상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검찰에서 최근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해서 문제가 됐던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사실 아마 검색했다는 언론사들이 류희림 씨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그러면 누가 언론사에게 제보를 했는지를 찾아내겠다는 의도라고 보고요.

그것들은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보도를 했을 때 취재원들을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살살이 뒤져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언론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언론노조 위원장께서 이게 단지 방심위 문제가 아니고 전방위적인 방송장악,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방심위 문제잖아요?

○참고인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앞으로 언론……

방심위 노조는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지요?

○참고인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언론노조 차원에서도 방심위 노조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인 윤창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최민희 지금 말씀하세요.

○참고인 윤창현 특히 방심위의 우리 구성원들은 저희 기자나 PD들처럼 권력 비판을 직접 하면서 권력과 대척점에 서거나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민간 독립기구이기는 합니다만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직장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그런데 류희림 씨가 오고 나서 지난 십수 년간 이런 공공기관의 업무 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루어질 수 없는 몰상식과 비합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는 우리가 일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을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이게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일인자가 저는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 또 양심적인 공직자들의, 특히 말단에서 일하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양심을 지켜 주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론노조는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심위에서 나와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김현 위원 저 짧게 한 2분만 더……

○위원장 최민희 아닙니다. 5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갔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현 간사님.

5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지금 저희가 방심위를 이렇게 전체회의나 청문회를 통해서 보다 보면 견제받지 않은 기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놔둔다라는 이런 빌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넣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해촉을 시킬 수 있다 또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법안 개정을 통해서 방심위에 제동을 좀 걸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심위 노조위원장께서 지금 방심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또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심위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참고인 김준희 국회에 빨의돼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의 류희림 방지법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요.

근본적으로 방심위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원 위촉 절차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덧붙이면,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성이 있거든요. 위원장의 임무가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불비한 게 방심위원장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 이게 빠져 있다는 걸 혹시 방심위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지요?

○참고인 김준희 예.

○김현 위원 그런데 이 정도 무지막지하게 위원장이 전횡을 부리고 특정 방송사들을 겨냥한 법정 제재와 이런 탄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민을 실제로 별로 하지 않아도 제동장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됐던 점을 이제 저희가 채워 나가려고 하는데, 향후에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방심위와 그다음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윤창현 위원장님이 방심위의 이런, 류희림 위원장이 들어서서 벌어진 이 행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윤창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당장 벌어지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막가파식 행태를 제어하기 위한 국회의 견제 노력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심의의 독립성 자체가 권력에 의해서 계속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국회 추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심위원들 또 대통령 추천으로 들어오는 방심위원들에 의해서 정파적으로 심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에 계속 노출돼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정치적 논란을 반복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공정성 심의 자체를 방심위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정성 심의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상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노조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미디어 혁신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통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오늘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회의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 와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를 보다 전향적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방심위 직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한발 한발 다가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할 시점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좌석을 보십시오. 여당 국회의원들 좌석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김태규 위원장대행 자리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로 하여금 방심위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했습니다. 사실상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올 때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무슨 보고를 하고, 다 압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과방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그리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보좌진이 있다면 이 사실 또한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김태규 등 위원장급이 안 나오셨는데 방심위 기획조정실장 등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로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0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2024. 9. 30.(월) 10:00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김정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강경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이종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제협력단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박종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허연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셀프심의 과태료 부과, 보복편파심의 등 관련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박우귀	방심위 특위 위원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김홍수	방심위 특위 위원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이다현	리어 예술단(주식회사 리어아트 컴퍼니)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김현우	YTN 기획조정실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정철민	YTN 인사팀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익제보자 색출수사의 문제점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공익제보자 색출수사의 문제점
윤정근	양천경찰서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수사 부진 문제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 편파부실조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 편파부실조사
김정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과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 편파부실조사
이항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과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 편파부실조사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과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 편파부실조사

참고인(6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일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등 관련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등 관련
탁동삼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2024. 9. 30.(월) 10:00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셀프심의 및 제보자색출 수사 등 관련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셀프심의 과태료 부과 등 문제점
김유진	전 방심위원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실체규명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방심위의 보복편파심의 관련

○출석 위원(14인)

김우영 김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최형두 한민수 황정아

○청가 위원(2인)

박충권 최수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종육

방송심의국장 최광호

권익보호국장 오인희

정책연구센터장 한명호

○출석 참고인

김준희(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윤창현(언론노조위원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9)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이상 7건 9월 9일 회부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6)

이상 4건 9월 10일 회부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2024. 9. 1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이상 2건 9월 11일 회부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6)

이상 2건 9월 1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6.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2)

이상 2건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9. 9.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2)

9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2)

이상 2건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7)

9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보고서 제출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 예타면제 결과 보고

(2024. 8.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